

(달성군)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기술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『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1일
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지원개요

- 지원목적 : 달성군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지원하고, 이전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
-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36,500천원
- 지원내용 : 기술이전료, 기술지원(시제품, 인증, 특허 등), 사업화지원(마케팅, 디자인 등) 등
-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3년 10월 31일까지

2 지원대상

- 신청자격
 -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인 중소기업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
 - 향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이 예정인 기업

구분	① 기술이전 지원	② 맞춤형 사업화지원
목적	기술이전료 지원	이전기술의 사업화지원
지원 규모	8社 정도(기업당 1건)	5社 정도(기업당 1건)
지원 금액	최대 6,500천원 이내	최대 30,000천원 이내
지원 대상	○ 공고일 이후 국내·외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(기술료 납부)	○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·외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○ 또는, 향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
공고 기간	상시 접수(예산 소진시까지) ※ 분기 또는 반기별 선정평가	'23. 2. 21(화) ~ 3. 21(화) ※ 선정기업 미달 시 추가공고
기업 부담금	-	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
지원 내용	단일	단일 또는 패키지 지원
	○ (단 일) 기술이전료 지원 ※ 기술이전 금액 10,000천원(공급가액) 이상	○ (단 일)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선택 ○ (패키지)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3개 이내 선택 ※ 패키지 구성 시 프로그램 간 연계성 제시 필요 ※ 기술이전 프로그램은 신청불가
우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5점)달성군내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급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예정인 기업 · (5점)대구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 · (3점)대구광역시 *5대 미래산업 관련 기술인 경우 *UAM(도심항공교통), 반도체, 로봇, 헬스케어, ABB(AI, Big data, Block chain) · (3점)*신산업 진출을 통한 사업재편 기업(3점) *신산업 판단 :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의2 · (3점)대형기술이전(기술료 5천만 원 이상) 기업(3점) · (3점)대구시 스타기업(Pre스타기업 포함), 고용친화기업, 장애인 고용률 준수기업(3점) · (2점)출연연, 전문연, 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기업(2점) ※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(최대 10점 부여) 	
유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기술이전 지원'과 '맞춤형 사업화지원'은 중복 신청가능 · 부가가치세(VAT) 및 지원금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· 총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(인건비, 간접비 불인정) · (기술이전 지원) 신청기업 평가 후 기술료 지급 · (맞춤형 사업화신속지원)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"성공" 판정 시 지원금 지급 * 공급업체는 선정기업이 직접 선택 및 계약 후 추진 	

※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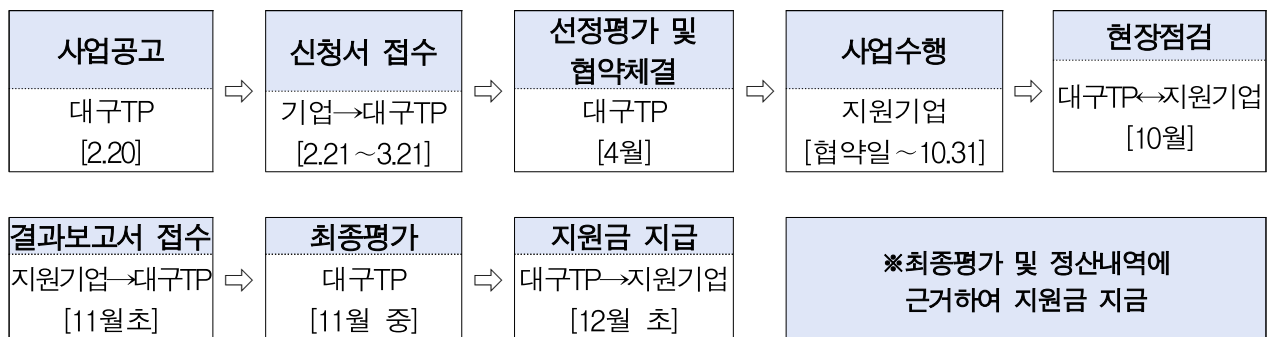
□ 세부지원 프로그램

프로그램명		지원내용
기술이전	기술이전 지원	기술이전료 지원 등
기술지원	기술사업화기획	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기획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
	기술지도(자문)	애로기술 진단, 기술컨설팅, 이전기술의 추가 기술자문 등
	시제품제작	이전기술의 시제품제작 지원(설계, 개발, 제작 등)
	제품고급화	이전기술을 활용한 기존제품 기능추가, 성능개선 등
	인증지원	제품 신뢰성, 성능, 표준화, 시험분석 등
	특허지원	국내외 특허 출원, 특허 로드맵, 특허전략수립 등
사업화지원	마케팅머티리얼	브로슈어, 팸플릿, 홈페이지, 홍보영상, 웹 제작 등
	디자인	패키지디자인, 제품디자인 등
	브랜드개발개선	CI/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
	국내외 컨설팅지원	법률, 경영, 재무, 회계, (합자)법인 설립 컨설팅 등
	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	국내외 시장조사 및 해외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지원
	국내외 전시회참가	부스제작비, 참가비, 통역비 등 부대비용 등
	투자유치	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IR 자료 작성 등

※ 특허, 인증,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(출원서, 인증서 등) 제출 필요

※ 상기 목록에 없는 항목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
4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※ 『기술이전지원』은 상시 접수 및 분기 또는 반기별 평가진행(현장점검 및 최종평가는 생략)

5

신청서 접수 및 문의

- 공고 및 접수 : 2023. 2. 21(화) ~ 3. 21(화) ※『기술이전지원』은 상시접수
- 신청서 교부 :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
 -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dgtp.or.kr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 - 온라인 : 담당자에게 전자우편(transfer@dgtp.or.kr)으로 신청
- 제출서류
 - 기술이전 지원(상시접수)

No.	제출서류		제출 파일명
1	서식 1	○ 기술이전지원 사업계획서 1부 ※ 직인이 날인된 PDF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	1-1. 사업계획서(한글) 1-2. 사업계획서(PDF)
2		○ 기술이전 계약서	2. 기술이전계약서
3	서식3	○ 중복지원금지 협약서,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, 기업(개인)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	3.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등 각 1부
4		○ 사업자등록증 1부 ※ 3개월 이내 발급분	4. 사업자등록증
5		○ 최근 2개년 재무제표(결산 기준) 각 1부 ※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	5-1. 재무제표(2020년) 5-2. 재무제표(2021년)
6	서식4	○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각 1부	6. 우대사항 확인서
7	서식5	○ 기술이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(특허등록원부 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등)	7. 특허등록원부 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
8		○ 기술료 입금내역(입금증, 통장사본 등)	8. 기술료 입금증빙

○ 맞춤형 사업화지원

No.	제출서류		제출 파일명
1	서식 2	○ 맞춤형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1부 ※ 직인이 날인된 PDF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	1-1. 사업계획서(한글) 1-2. 사업계획서(PDF)
2		○ 공급기업의 견적서 각 1부 ※ 공급가액(VAT제외)으로 견적서 제출	2-1. 마케팅 견적서(예시) 2-2. 시제품 견적서(예시)
3		○ 기술이전 계약서 ※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만 기술이전확약서 제출(서식 6)	3.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확약서
4	서식3	○ 중복지원금지 협약서,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, 기업(개인)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	4.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등 각 1부
8		○ 사업자등록증 1부 ※ 3개월 이내 발급분	5. 사업자등록증
9		○ 최근 2개년 재무제표(결산 기준) 각 1부 ※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	6-1. 재무제표(2020년) 6-2. 재무제표(2021년)
7	서식4	○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각 1부	7. 우대사항 확인서
10	서식5	○ 기술이전 완료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(특허등록원부 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등)	8. 특허등록원부 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

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술사업화지원센터	김성혜 책임연구원	053-757-3783	transfer@dgtp.or.kr
	배성현 주임연구원	053-757-3788	

6

평가방법

- 선정방법 :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
- 선정기준 : 기술성(20), 사업성(30), 추진역량(20), 파급효과(20), 우대배점(10점)
※ 우대배점 : 해당표기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
- 평가방법 : (선정평가위원회) 사업계획서 발표평가
(최종평가위원회) 결과보고서 발표평가
※ 접수규모에 따라 서면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 『기술이전지원』은 서면평가로만 진행

□ 지원제외 대상
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/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/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/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/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
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일 경우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 - 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.
 - *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*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- * 상기의 신용등급이 “BBB” 에는 “BBB+”, “BBB”, “BBB-” 를 모두 포함함
 - 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-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 -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된 후에도 상기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취소, 협약해약,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